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문대림 · 이원택
박민규 · 이주희 · 진선미
박상혁 · 맹성규 · 김태년
진성준 · 장철민 · 한병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울 · 불안, 가정불화,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
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 현행법에 따라
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
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
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
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
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전국 시 · 도지사
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
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제15호 및 제16호”를 “제4항제15호, 제16호 및 제17호”로 한다.

1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.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⑤ <u>제4항제15호 및 제16호</u>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⑤ <u>제4항제15호, 제16호 및 제17호</u> 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